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7월 29일, 김태선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7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5. 11.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법안심사소위(2025. 11. 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8차 전체회의(2025. 11. 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태선의원)

현행법은 기상자료의 수집·제공, 예보 및 민간개방 등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상청의 업무는 주로 기상관측 및 예보 중심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속 급변하는 기상환경에 최근 들어 기상정보의 활용 범위와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 관측과 예측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상정보, 지진·지진해일·화산 정보 및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결합한 기상기후데이터의 개념, 통합관리, 활용 촉진, 서비스 기반 마련 등과 관련된 조항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상기후데이터의 공동활용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업무,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기후데이터의 체계적인 제공 및 품질관리·통계·활용 등을 위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15호 및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기상기후데이터는 공공데이터로서 사회·산업 전 분야와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안전을 위한 국정운영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상자료의 수집·제공, 예보 및 민간 개방 등에 관한 규정과 기상관측 및 예보업무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기상 관측과 예측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기상정보, 지진·지진해일·화산 정보 및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결합한 기상기후데이터의 개념, 통합관리, 활용 촉진, 서비스 기반 마련 등과 관련된 조항은 부재한 상황이므로, 일상화된 자연재난과 기후변화로부터 과학적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화무쌍한 자연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예측하는 기상기후데이터의 사회 전 분야 활용 확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국가적 공동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최근 사회적 수요와 활용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기상기후데이터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음